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65
----------	------

제출년월일 : 2013. 10. .

제 출 자 : 충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변경된 지원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충주시로 이전하는 기업투자유치에 필수적인 중점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 나. 충주시로 이전하는 기업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을 통하여 우리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인구 증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산업의 육성과 경제 활성화 도모 ⇒ 30만 자족도시건설을 위한 기반 구축

2. 주요내용

- 가. 용어(설비투자지원) 일부 수정(안 제2조제15호)
 - 기존 : 최초 착공일부터 3년 이내에 투자하는 금액
 - 변경 :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투자하는 금액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맞게 수정(2012.1.4)
- 나. 신설·증설 시의 설비투자지원금 중액(안 제22조)
 - 기존 :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소요비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비 3억원
 - 변경 :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소요비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비 10억원
- 다.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조항 신설(안 제24조의4)
 - 세대원 1명당 50만원(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
 - ☞ 신·증설 기업의 근로자가 충주시로 주민등록 이전 시
 - 지원근거 : 균특법 제11조제3항제3호

라. 이전 및 신·증설 시 투자이행기간 수정(제25조)

- 기존 : 사업계획서의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상
- 변경 : 시장이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 2012.6.29 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기준에 맞게 변경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접수사항 없음.

4. 기타 참고사항 : 따로 붙임

붙임 : 가.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기타참고사항 (관계법령 등)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착공일”을 “착공신고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를 “포함”으로, “3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외”를 “포함”으로 한다.

제5장에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의 지급) ① 시장은 충주시로 이전, 신·증설, 국내복귀 기업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충주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 세대원 1명당 50만원(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전기업대표는 공장 등록 완료 후 1년 이내에 해당 직원의 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정착지원금 지급은 1회로 한정한다.

③ 이전기업 대표는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2년 이내 퇴사, 이직, 타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제2항 중 “투자계획서의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을 “최초 보조금 지급일부터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개시 일부터 7년”을 “사업을 시장이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각종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원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부지매입보조금과 투자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이미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 지급 심의대상 업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수도권 내 대상지역(제19조 관련)

- ◆ 서울특별시 전역과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외)

-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는
특수상황지역이므로 제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설비투자 지원”이란 지방이전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최초 <u>착공일</u> (건축물 매입·임대일 때에는 입주일)부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에 투자하는 건축비(매입·임차비용을 포함하되 거주용은 제외),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5. ----- ----- ----- <u>착공신고일</u> ----- ----- ----- ----- -----.
16. ~ 18. (생략)	16. ~ 18. (현행과 같음)
제22조 ① 제19조제1항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시 지역내에 공장을 신설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면 토지매입비를 <u>제외</u> 한 소요 비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시비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① ----- ----- ----- ----- ----- <u>포함</u> ----- ----- ----- <u>10억원</u>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토지매입비를 <u>제외</u> 한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이 30억원을 초과	2. ----- <u>포함</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u>제24조의4(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의 지급) ① 시장은 총주시로</u>

현행	개정안
<p>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개시 일부터 7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생략)</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수도권 내 대상지역 (제19조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연수구 송도 매립지* 제외)</p> <p>※ 송도매립지는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조 조성을 위해 1990년 11월 12일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 공사 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p> <p>◆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p> <p>◆ 위 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호·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은 제외</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을 시장이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p> <p>-----.</p> <p>④ (현행과 같음)</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수도권 내 대상지역 (제19조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서울특별시 전역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외)</p> <p>◆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p> <p>(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는 특수 상황지역이므로 제외)</p> </div>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2013.3.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52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 “보조사업”이라 함은 제16호 내지 제18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설비투자지원”은 제16호 내지 제18호의 기업이 최초 착공 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투자하는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하되 거주용은 제외),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 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단, 국내복귀기업은 4년)

27. “의무 사업 이행기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② 수도권기업 이전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다.

1. 보조금 신청시 이전할 사업을 별표 1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영위(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3년 이상 변동이 없어야 하고, 기업의 사정변경으로 법인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것

[별표 1]

수도권내 대상지역(제5조 2항 관련)

- ◆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외)
-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는 특수상황지역이므로 제외)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③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고용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4.2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신설, 증설 시 설비투자지원금 증액(안 제22조)
-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의 지급(안 제24조의4)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1호와 제5호)

3. 미첨부 사유

- 신설, 증설 시 설비투자지원금

※ 신·증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나 지원액은 기업체 유치 활동을 통한 유치 진행 상황, 투자 금액, 고용 규모 등의 협상이 선행되어야 산정이 가능함. 따라서 신·증설 기업의 충주 이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추계는 어려움.

□ 2012년 신·증설기업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억원)

업 체 명	총투자 규 모	토 지 매입비	설 비 투자액	투자금 의 5%	지 원 결정액	비 고
A 업체	98	12	86	2.8	1	설비투자액*1.25%
B 업체	58	10	48	1	0.3	설비투자액*0.75%

※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소요비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최고 3억원

□ 보조금 한도액 증액 시 지원 시플레이션

(단위:억원)

업체명	총투자 규 모	토 지 매입비	설 비 투자액	투자금 의 5%	지 원 결정액	비 고
A 업체	98	12	86	3.4	1.2(중0.2)	총투자규모*1.25%
B 업체	58	10	48	1.4	0.4(중0.1)	총투자규모*0.75%

※ 토지매입비 포함한 소요비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의 5% 범위에서 최고 10억

예) 230억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이 신용등급, 고용인원, 투자금액 등 타당성 평가에서도 100점을 맞을 경우에 최고 10억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음

○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소요예산 50,000천원 정도)

- 100명 × 500천원 = 50,000천원

※ 2012년 : 15개 업체 / 50명 주소 이전

4. 작성자 : 경제건설국 기업지원과장 손창남